■ 신제품(NEP)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[별지 제25호서식]

신제품(NEP)지정 물품등록 신청서

※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60일
신청구분	□ 지정범위 확대 □ 지정범위 내 모델 등록			
지정번호		지정명칭		

신청인	기관(업체)명			대표자	
	주소			전화	
	담당자	소속	성명		직위
		전화 (휴대전화)	전송		전자우편

신청사유	

구분	물품분류번호	물품분류명	물품식별번호	식별명
1				
2				
3				

「신제품(NEP)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기관(업체)명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평가기관 귀하

제출서류	1.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(지정범위 확대 시 반드시 제출) 2. 신제품지정서 사본	수수료 없음
평가기관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➡	접수	➡	서류면접심사	➡	현장심사	➡	결과통보
신청인		평가기관		물품등록 심의위원회		물품등록 심의위원회		산업통상부